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 - 호

2015년 제2차 서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공고

이웃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사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**『2015년 제2차 서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』**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5. . .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사업개요

■ 사 업 명 : 제2차 서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

■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15. 11. 30.

■ 사 업 비 : 금15,000천원(1개 사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)

■ 신청자격 : 서대문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(모임)·단체

-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
-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
- 대표제안자 3인중 1인 이상 동일한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
-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대문구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

* 제외분야 :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, 2015년 타 공모사업 선정·지원사업

※ 지원 제한 사업 :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

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적으로 보조금(국·시·구비)을 지원받는 사업
- 일방적·수혜적 복지사업 (ex. 단순 도시락(반찬)배달, 김치전달 등)
-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(지원)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직업훈련, 교과목 특기적성, 어학,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
-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

2. 공모 분야

유 형	내 용
아파트공동체 활성화	- 아파트 관리비 및 에너지절감(관리비 진단사업) - 층간소음,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- 주민소통게시판 운영 등 주민화합 - 생활공유사업(도서, 공구, 공동육아, 차량(카 쉐어링), 공유창고 등) - 텃밭가꾸기, 친환경생활, 문화강좌, 주민화합 등 - 기타 단지내·외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정하기에 적합한 사업

※ 생활공유사업의 경우 가점 부여

3. 제안자 의무사항

■ 사업계획 수립시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사업으로 제출하여야 함

※ 마을공동체교육은 추후 서대문구 마을지원센터와 상담 후 실시

■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,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

■ 선정된 제안사업의 대표제안자는 회계 및 실무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.

■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

■ 2015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준수해야 함

4. 사업비 지원

■ 1개 주민모임(단체)당 1개 사업만 지원

■ 사업 성격·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자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으나 사업선정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며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에 따라 차등 지원

5. 신청방법

■ 공고기간 : 2015. 7. 10.(금) ~ 7. 31.(금)

■ 접수기간 : 2015. 7. 20.(월) ~ 7. 31.(금)

■ 접수방법

– 이메일 접수 : hyen02@sdm.go.kr

■ 제출서류 (※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·공고에서 다운로드)

- 사업제안서 1부.(주민모임명단 포함)
- 사업계획서 1부.
- 주민(모임)·단체소개서 1부.
-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.

6. 제안자 참여 심사

■ 심　　사 : 마을공동체 소위원회

■ 심사방법 : 사업별 대표제안자 제안 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

■ 심사내용 : 사업의 세부내용 청취(마을사업의 의지 확인),
예산 타당성 검토, 사업의 기대효과, 사후관리 등

7. 사업 선정

■ 심사방법 : 1차 - 마을공동체위원회
2차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

■ 심사기준

- 사업의 타당성 : 필요성, 공익성, 실현가능성
-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: 자발성, 창의성, 주민참여, 지속가능성, 자부담사업비반영정도, 사업의파급효과

■ 선정발표 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

8. 사업 선정 후 제출서류

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

■ 사업실행계획서 1부(교부결정 예산에 따라 작성)

■ 청렴서약서 및 이행확약각서 1부

■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사본 1부

- 우리은행 보조금 및 자부담통장 개설 · 체크카드 발급

[통장명의: 대표자 성명(단체명) – 예) 홍길동(고은마을주민모임)]

■ 서대문구 우리마을지원사업(아파트공동체) 협약서 작성

9. 사업비 지급방법

■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 교부

■ 향후 사업계획 수행상황에 따라 월별 교부

-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(2015.1.1.시행) 반영
- 보조금 교부 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비 일괄 교부

10.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

■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구청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
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을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함.

-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
-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하였을 때
-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등

11. 추진 일정

일 정	내 용
2015. 7월	사업 공모 · 접수
2015. 8월	제안자 참여심사 (마을공동체 소위원회)
2015. 8월	1차 마을공동체위원회
2015. 8월	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(사업 선정)
2015. 8월	사업 선정 통보 및 사업시행 계획서 접수
2015. 8월	협약체결 및 선정 사업지기 회계교육
2015. 8월	보조금 교부
협약체결일 ~ 2015.11.30	사업시행 및 중간 점검
2015. 12월	사업 결과보고, 정산 및 평가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12. 기타 안내사항

■ 문의처 :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(02-330-1383)

붙임 1. 제출서류 1부.
2. 2015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부.